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법률 일괄 정비》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51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2
2. 개별 법률안 검토	7
가. 제척기간	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8
2) 건설기술 진흥법(안 제3조)	12
3) 건설산업기본법(안 제4조)	17
4) 공인중개사법(안 제8조)	21
나. 인·허가 의제	2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2조) ..	26
2) 건축법(안 제5조)	30
3) 골재채취법(안 제6조)	35
4) 공공주택 특별법(안 제7조)	38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9조)	41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안 제10조)	45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제11조)	47

8) 도시개발법(안 제12조)	52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3조) ...	55
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 제14조)	56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제15조)	58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제18조)	61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9조)	65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0조)	69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21조) ...	72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23조)	74
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 제24조)	77
18) 주택법(안 제25조)	79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6조)	82
20) 택지개발촉진법(안 제27조)	85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28조)	89
 다. 과징금	 9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91
 라. 이행강제금	 9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2조) ...	95

2) 건축법(안 제5조)	98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101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제18조)	103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106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28조)	110
 마. 이의신청	 11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114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안 제16조)	116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12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9조)	125
 바. 부칙	 12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1. 21.
3. 회 부 일 :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국토 분야) 28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 의제, 과징금의 납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시행)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특히, 「행정기본법」의 규정 중 2023년부터 시행(2023. 3. 24. 시행)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 의제,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한 이

1)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신청 등의 사항²⁾은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제도인바, 개별 법률의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재검토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개별 법률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들을 「행정기본법」의 원칙·기준·취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행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행정법의 적용 관계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행정기본법」 상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②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③ 과징금의 납부(제29조),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1조) 및 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의 규정³⁾을 기준으로 개별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 「행정기본법」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정비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

정비 기준 조항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절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①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중복되는

정비 기준 조항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를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내용은 삭제하고, ②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며,

③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었으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행정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규율하는 등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특례규정으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른다는 확인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개별 법률의 정비 기준

구 분	내 용
유형 1	「행정기본법」과 <u>동일하게 규정</u> 된 경우 → <u>해당 규정 삭제</u>
유형 2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u>정비가 필요한 경우</u>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등) → <u>해당 규정을 삭제</u> 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유형 3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었으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u>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u> → <u>특례사항만 별도로 규정</u>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이하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의 정비 대상 28개 법률에 대하여 유형별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함.

〈표 2〉 국토교통부(국토 분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정비 대상 법률

	대상 법률	정비 유형					
		제척 기간 ¹⁾	인·허가 의제 ¹⁾	과징금 ¹⁾	이행 강제금 ¹⁾	이의 신청 ²⁾	기타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3	건설기술 진흥법	○					
4	건설산업기본법	○					
5	건축법		○		○		
6	골재채취법		○				
7	공공주택 특별법		○				○ ³⁾
8	공인중개사법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2	도시개발법		○				
1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25	주택법		○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택지개발촉진법		○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정비대상 법률 수		4개	21개	1개	6개	4개	1개

- 주 1) 제척기간, 인·허가 의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과징금 납부, 이행강제금 부과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
- 2)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는 특례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

2. 개별 법률안 검토

가. 제척기간

제척기간 관련 조항 정비대상 4개 법률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과 다르게 규정된 개별 법률의 현행 조항을 「행정기본법」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하되,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 법률별로 검토함.

〈표 3〉 제척기간 관련 조항 정비대상 4개 법률 현황

연번	정비대상 법률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행정기본법」	개별법		
			현행	개정안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부터 5년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년	<u>위반행위가 종료된 날</u> 부터 5년	○
2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부터 5년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	현행 유지	○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부터 5년	①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일부 10년 ¹⁾	현행 유지	○
			② 위반행위 종 료일부 5년 ²⁾		
			③ 위반행위 종 료일부 3년 ³⁾		
4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부터 5년	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
			미규정	<u>위반행위가 종료된 날</u> 부터 5년	
			② 업무정지처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년	<u>위반행위가 종료된 날</u> 부터 3년	

주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제8호·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 위반의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⁴⁾(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생략)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u>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u>	④ ----- ----- <u>위반행위가 종료된 날</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안 제1조는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3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42조) 및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43조)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중 「감정평가법」 제32조의 개정은 제재처분⁵⁾의 제척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3조를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기간, 이의신청, 과징금 관련 정비 대상임.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현행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⁶⁾ 취소의 제척기간 및 감정평가사등⁷⁾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 제32조의 개정은 이러한 제척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⁸⁾과 통일하여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제정안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

제정안에 따른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⁹⁾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정안 「감정평가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8)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9)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32조제6항 신설).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변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과 「행정기본법」의 기준이 일치되어 수범자의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한편,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도래 시점이 현행법에 비해 지연¹⁰⁾되어 보다 침익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척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4항¹¹⁾ 및 전문자격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반사유발

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10) 대법원 판례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고 있음.

“표시광고법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11)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일'로 규정한 입법례¹²⁾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감정평가법」 제32조제6항의 신설은 「감정평가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감정평가법」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2) 「행정사법」

제32조(업무의 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변리사법」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제척기간) ①·② (생략) <u><신설></u>	제80조의2(제척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u>

안 제3조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¹³⁾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제6호는 제외)¹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13)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나목·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고,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15)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

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정지의 경우 일정 기준일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 나. 건설사업자에게 채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3조¹⁶⁾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안 제3조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¹⁷⁾하고 있는바, 안 제3조는

16)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같은 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제척기간) (생략) <u><신설></u>	제84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안 제4조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¹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¹⁹⁾의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18)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제8호·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19)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일부 규정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3조²⁰⁾제1항

- ③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20)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안 제4조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²¹⁾하고 있는바, 안 제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1)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업무의 정지) ①·② (생략) <u>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u> <u><신설></u>	제39조(업무의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①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u> <u>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경우: 5년</u> <u>2.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3년</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u>

안 제8조는 「공인중개사법」 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제정안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 신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항²²⁾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제정안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9조제1항²³⁾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의 제척사유는 현행 3년의 특례 규정을 유지하며(제정안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재처분의 제척사유의 기산일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제정안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정안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2항).

안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변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과 「행정기본법」의 기준이 일치되어 수범자의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한편,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도래 시점이 현행법에 비해 지연²⁴⁾되어 보다 침익

22)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23)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척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4항²⁵⁾ 및 전문자격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반사유발생일’로 규정한 입법례²⁶⁾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24) 대법원 판례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고 있음.

“표시광고법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 58407 판결)

25)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행정사법」

제32조(업무의 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변리사법」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나.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²⁷⁾ 관련 조항 정비대상 21개 법률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준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내용은 삭제 또는 정비하고,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 법률별로 검토함.

〈표 4〉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 정비대상 21개 법률 현황

제정안	정비대상 법률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 규정 삭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미제출시 협의 간주 규정 삭제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관련 서류제출 의무 규정 삭제	「행정 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행 조문 통폐합 및 자구 수정)	○			○
제5조	건축법	○				○
제6조	골재채취법	○				○
제7조	공공주택 특별법	○	○			○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현행 조문 통폐합 및 자구 수정)	○	○		○
제1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27)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임.

제정안	정비대상 법률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 규정 삭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미제출시 협의 간주 규정 삭제	(사업)사업자의 인·허가 관련 서류제출 의무 규정 삭제	「행정 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제12조	도시개발법		○	○	○	○
제13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제14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
제1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
제18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	○	○
제1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0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제21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
제2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
제23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24조	주택법		○	○	○	○
제2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27조	택지개발촉진법	○	○			○
제28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²⁸⁾(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협의·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인·허가 의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정비 대상임.

안 제2조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상 인·허가 의제(제14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제30조의2)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중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의 개정은 제정안 상 「개발
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²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
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생업을 위한 시설
-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
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
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
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제12조제3항³⁰⁾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협의·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³¹⁾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3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런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2) 건축법³²⁾(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략)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u>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u>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 ----- <u>허가·인가·지정·협의·신고 또는 신청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u> 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⑥ <u>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신설></u>	⑥ <u>제5항에 따른</u> ----- ----- ----- ----- ----- ----- ----- ----- ----- ----- -----.
⑦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

현행	개정안
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u>처리기준</u>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u>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⑩·⑪ (생략)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u>제6항의</u>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u>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u> 준용한다.	----- ----- <u>처리기준(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u>.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u>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삭 제> ⑩·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 ----- ----- ----- ----- ----- ----- ----- <u>제6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u> ---- -.

현행	개정안
③ ~ ⑤ (생략)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 가에 관하여는 <u>제11조제5항 및 제6항</u>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 고에 관하여는 <u>제11조제5항·제6항</u> 및 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1조제5항부터 제</u> <u>7항까지</u> 를 -----. ④ ----- ----- <u>제11조제5항부터 제</u> <u>7항까지</u> -----.

안 제5조는 현행 「건축법」 상 인·허가 의제(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제80조)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5조 중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은 제정안 상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허가·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수적인 자구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2) 「건축법」은 인·허가 의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정비 대상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단서³³⁾에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건축법」 상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심의,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 등 대부분 개별법³⁴⁾의 건축 인·허가 등 의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음.

건축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목적의 대

3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34) 타 법률에 의해 건축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사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규모 건축물 등으로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령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외에도 건축계획·설비·구조·피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등을 받아 건축 인·허가등을 의제하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건축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신고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심의, 의견 청취 등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585

3) 골재채취법(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의 의제) ①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6조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³⁵⁾제2항

35)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현행 「골재채취법」 제23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본법」 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 제6조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골재채취법」 제23조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³⁶⁾하고 있는바, 안 제6조는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36)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 ----- -----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1. ~ 37. (생략)	1. ~ 37.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② ----- ----- ----- ----- ----- 이 경우 관

현행	개정안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신설>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7조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의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기존과 같이 30일로 하고,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의 개정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조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종전과 같이 30일로 유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³⁷⁾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협의 간주의 제척기간을 제정안을 기준으로 30일로 봐야 할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후단을 기준으로 20일로 봐야 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인·허가 의제 사항을 정비한 타 입법례³⁸⁾를 참고하여 안 제7조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3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3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 -----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 ---- 제61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 ----- -----.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제9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1조의 개정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현행법 제6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에 관한 현행 「국토계획법」 제61조제5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³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계획법」 제92조의 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39)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의 작성, 변경작성,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제출 규정에 관하여 현행 「국토계획법」 제92조제2항의 내용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에 관한 현행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계획법」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안 제10조)

[illegible]

안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 개정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 -----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② ----- ----- ----- -----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현행	개정안
<u>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u> 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략) <신설>	<u>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u> ④ ----- ----- ----- ----- ----- ----- -----제3항----- ----- ----- ----->. <후단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1조는 제정안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또는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⁴⁰⁾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는 「행정기본

40)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법」 제24조제2항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기간(20일)과 다른 기간(30일)⁴¹⁾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안 제11조는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⁴²⁾하고 있는바, 안 제11조는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1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4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종전과 같이 30일로 유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⁴³⁾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

41)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된 것으로 보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된 것으로 봄.

42)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

지로 보이는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는 종전의 후단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협의 간주의 제척기간을 제정안을 기준으로 30일로 봐야 할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후단을 기준으로 20일로 봐야 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인·허가 의제 사항을 정비한 타 입법례⁴⁴⁾를 참고하여 안 제11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6

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8) 도시개발법(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후단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 ----- ----- ----- 제5항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2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개정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 중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농지전용 허가 의제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 등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밖의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도시개발법」 제19조제4항⁴⁵⁾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⁴⁶⁾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⁴⁷⁾은 순환용주택,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45)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46)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7)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본법」의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개정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제>

안 제13조에 따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 내륙발전법”이라 함)의 개정은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안 제15조제2항 삭제), 인·허가등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20일 이내 의견제출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15조 제5항

삭제),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5조제4항).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제4항)하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현행 「해안내륙발전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행정기본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해안내륙발전법」의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0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를 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한다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 -----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 ----- ----- . ----- ----- 한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현행	개정안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개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종전과 같이 30일로 유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⁴⁸⁾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48)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협의 간주의 제척기간을 제정안을 기준으로 30일로 봐야 할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후단을 기준으로 20일로 봐야 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인·허가 의제 사항을 정비한 타 입법례⁴⁹⁾를 참고하여 안 제1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4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⁵⁰⁾(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 <u>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u>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 ----- ----- <u>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③ ----- ----- -----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인·허가 의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정비 대상임.

현행	개정안
따른 인·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 1. ~ 3. (현행과 같음)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 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 ----- 제4항 ----- ----- .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신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8조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상 인·허가 의제(제55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제65조)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8조 중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의 개정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 중 절차 간소화 특례와 관련 인·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등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밖의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6항⁵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⑥ 시장·군수등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7항⁵²⁾은 관련 인·허가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본법」의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⁵³⁾(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9조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상 인·허가 의제(제21조) 및 이의신청(제34조 및 제39조의 21)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중 「산업입지법」 제21조의 개정은 현행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⁵⁴⁾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승인·변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 관련 정비 대상임.

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 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 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사용·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 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 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 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경승인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산업입지법」 제21조제4항 신설).

제정안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산업입지법」 제21조제2항⁵⁵⁾은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한 행정기관 간 협의기간을 「행정기본법」상 협의기간인 ‘20일’보다 짧은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⁵⁶⁾은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점으로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본법」의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입지법」 제21조제2항은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15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20일’의 협의기간 규정⁵⁷⁾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안에 따른 「산업입지법」 제21조제4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⁸⁾.

문 의 처

02)6788-5574

5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58) 이 경우, 다음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를 동의·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u>한다)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u>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② <u>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	<u><삭 제></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20조는 제정안에 따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⁵⁹⁾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

59)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런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안 제20조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⁶⁰⁾하고 있는바, 안 제20조는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0

60)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21조)

[illegible]

안 제15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내용 중 인·허가 의제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⁶¹⁾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6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6)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37.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신설>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한다)에 관하여 건설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1. ~ 37. (현행과 같음) ②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현행	개정안
	<u>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안 제23조는 제정안에 따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24조⁶²⁾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62)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현행 「행복도시법」 제22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안 제23조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행복도시법」 제22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⁶³⁾하고 있는바, 안 제20조는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0

⁶³⁾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8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24조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 중 행정청 간 협의기간과 관련 인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등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밖의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제2항⁶⁴⁾은 인·허가등의 의제와

6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한 행정기관 간 협의기간을 「행정기본법」 상 협의기간인 ‘20일’보다 짧은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⁶⁵⁾은 관련 인·허가 수수료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본법」의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제2항은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15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20일’의 협의기간 규정⁶⁶⁾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안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⁷⁾.

문 의 처
02)6788-5581

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66)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67) 이 경우, 다음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18) 주택법(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후단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

현행	개정안
	<u>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안 제25조는 「주택법」 제19조에 규정된 내용 중 인·허가 의제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24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 제24조⁶⁸⁾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됨.

68)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그런데 현행 「주택법」 제19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제4항⁶⁹⁾ 및 제5항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안 제25조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주택법」 제19조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6

69)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데, 「주택법」 제19조제3항 후단에도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생략)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 승인 또는 변경승인----- ----- ----- ----- -----.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승인 또는 변경승인-----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현행	개정안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를 준용한다.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 ----- ----- ----- ----- . <u><후단 삭제></u>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u><신 설></u>	

안 제26조에 따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6조의 개정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된 절차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20) 택지개발촉진법(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0. (생략)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u><신설></u>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1. ~ 20. (현행과 같음) ② ----- ----- ----- -----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27조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25조제1항⁷⁰⁾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4항⁷¹⁾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 제27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⁷²⁾의 인·허가 의제 요건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25조제1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⁷³⁾가 관련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70) 「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를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7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7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만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개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실시하여야 하는 협의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 후단 삭제),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⁷⁴⁾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4항 신설).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74)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는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의 이익이나 공익 등을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개정은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등의 의제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 후단 삭제는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⁷⁵⁾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4항의 신설은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법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75)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⁷⁶⁾(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생략)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28조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상 인·허가 의제(제14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제55조의2)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7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의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정비 대상임.

안 제28조 중 「혁신도시법」 제14조의 개정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내용 중 서류 제출 간소화 규정과 관련 인·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등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밖의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혁신도시법」 제14조제5항⁷⁷⁾은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하도록 간소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⁷⁸⁾은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본법」의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0

7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다. 과징금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제4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행	개정안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u> 1. <u>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u> 2. <u>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u> 3.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행위를 한 경우</u> 3.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u>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안 제 1조 중 「감정평가법」 제43조의 개정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먼저, 「감정평가법」 제43조제1항의 개정은 현행 「감정평가법」 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가 「행정기본법」 제29조⁷⁹⁾

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는바,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권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음, 「감정평가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⁸⁰⁾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과징금 납부 관련 제도는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권익 보호 및 법률유보적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79)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0)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정비대상 6개 법률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과 중복되는 개별 법률의 조항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 법률별로 검토함.

〈표 5〉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정비대상 6개 법률 현황

연번	정비대상 법률	부과기준 (기산점·횟수)	「행정기본법」 과의 중복 규정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 유지	삭제	신설
2	건축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현행	개정안
<u>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⑦ <u>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u> ⑧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⑨ <u>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안 제2조 중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중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유지하고(제정안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⁸¹⁾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

81)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

의 규정이 불필요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6항).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건축법(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80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안 제5조 중 「건축법」 제80조의 개정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현행 「건축법」 제8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중 제5항은 유지하고(제정안 「건축법」 제80조제3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⁸²⁾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현행 「건축법」 제80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82)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정안에 따른 「건축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건축법」 제80조제4항).

「건축법」 제80조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5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⁸³⁾(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략)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안 제17조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 함) 상 이의신청(제13조) 및 이행강제금(제18조) 규정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8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정비 대상임.

안 제17조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⁸⁴⁾와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 제기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임을 명확히 하며(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제5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제6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제7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84)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65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시장·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안 제18조 중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의 개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제4항은 유지하고(제정안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⁸⁵⁾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85)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제3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안 제22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제6항은 유지하고(제정안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제2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⁸⁶⁾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

86)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 제3항).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한편, 안 제22조 중 「시설물안전법」 제61조의2제2항의 개정⁸⁷⁾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있고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⁸⁸⁾은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⁸⁹⁾을 고려하여,

87) 「제정안」 제2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9) 제정안 제17조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의제기’에 대해 현행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설물안전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제정안」 제17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략)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 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삭제>
⑤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안 제28조 중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의 개정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현행 「혁신도시법」 제55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제4항은 유지하고(제정안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제2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⁹⁰⁾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현행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정안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제3항).

90)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혁신도시법」 제55조의2의 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마. 이의신청

이의신청 관련 조항 정비대상 4개 법률의 개정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과 결과통지 기한과 다르게 규정된 개별 법률의 현행 조항을 「행정기본법」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하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 법률별로 검토함.

〈표 6〉 이의신청 관련 조항 정비대상 4개 법률 현황

(단위: 일)

연번	정비대상 법률		이의신청 기한			결과통지 기한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행정 기본법	개별법		행정 기본법	개별법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0	30	현행유지	14 (+10)	30 (+30)	현행유지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0	30	현행유지	14 (+10)	30	현행유지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30	1개월	현행유지	14 (+10)	미규정	<u>2개월</u>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0	미규정	현행유지	14 (+10)	미규정	현행유지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부담금 부과처분	30	60	현행유지	14 (+10)	15	현행유지	○
		개발이익의 재투자 처분	30	60	현행유지	14 (+10)	15	현행유지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이의신청) 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안 제1조 중 「감정평가법」 제42조의 개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⁹¹⁾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한과 연장 범위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9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 제42조의 개정은 「감정평가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u>서면</u>(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u>특례</u>) ①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u>서면</u>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u>특례</u>) ①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 제7조 및 제11조는 각각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

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의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해당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달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특례를 인정하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함)⁹²⁾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9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⁹³⁾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16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동산가격공시법」 제7조제3항의 개정조항과 제11조제4항의 신설조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⁹⁴⁾는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과 통지 기한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9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통지 기한의 예외적 기간 연장도 함께 적용되게 됨.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은 행정청에 이와 같은 예외적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예외적 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예외적 기간 연장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7조와 제1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⁹⁵⁾.

둘째,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제3항의 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일부 유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⁹⁶⁾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95)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추가적으로 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안 제16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음.

안 제1조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이의신청의 결정 기한에 대한 예외적 기간 연장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항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용 범위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를 제외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전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제19조의 경우 안 제16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개정 대상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준용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는 표준지공시지가⁹⁷⁾와 달리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⁹⁸⁾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제8항⁹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9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9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9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제11조가 준용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제3항의 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9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① (생략)	제13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 ----- -----.

안 제17조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의 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¹⁰⁰⁾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¹⁰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10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1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기한을 신설하는 한편, 그 기한을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¹⁰²⁾에 따른 14일에 대한 특례로서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결과 통지기한은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에서 해당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권익 보호 및 법률유보적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이고,

해당 통지기한을 「행정기본법」상 14일에 비해 긴 2개월로 규정하려는 것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113조제2항¹⁰³⁾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제2호¹⁰⁴⁾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10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3) 「제정안」 제17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13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와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을 통상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 6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¹⁰⁵⁾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을 위한 사전검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심의 이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위한 사후검토에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의 개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 적용관계의 명확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5) 인천광역시 강화군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30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60일 등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의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의21(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안 제19조 중 「산업입지법」 제34조 및 제39조의21의 개정은 시설부담금 부과처분¹⁰⁶⁾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¹⁰⁷⁾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현행 「산업입지법」 제34조 제1항·제2항¹⁰⁸⁾ 및 제39조의21 제1항·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

제2항¹⁰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¹¹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산업입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되 「행정기본법」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사항은 현행 「산업입지법」의 조항을

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0)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바.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제정안에 따른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¹¹¹⁾ 및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¹¹²⁾의 개정규정 상 제척기간의 기산일 등의 변경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첫째, 시행일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1) 「제정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32조(인가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12) 「제정안」 제8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①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경우: 5년
2.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3년

① 대체로 국민에게 유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반사유발생일’에서 ‘위반행위종료일’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과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등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를 보다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8개의 개정 대상 법률의 경우 각각 하위 법령에서 현행 상위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하위 법령의 정비를 위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7〉 하위 법령의 정비를 위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법률

	대상 법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건설기술 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건축법	○
6	골재채취법	○
7	공공주택 특별법	
8	공인중개사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도시개발법	○
1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법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법률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5	주택법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택지개발촉진법	○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둘째, 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제척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각각 「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및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¹¹³⁾ 등을 고려하여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①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 이전까지는 위반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위반행위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제척기간이 완성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113)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변된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② 시행 이후부터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¹¹⁴⁾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다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 차원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행정기본법」 115)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14) 「제정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32조(인가취소 등)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8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15) 「행정기본법」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